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10월 생산은 전월대비 1.5% 감소(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5%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2.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6%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2022년 10월 소비는 전월대비 0.2%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보합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5.0%)에서 줄었으나,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등 기계류(1.9%)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보합(전년동월대비 16.8%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3.8%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58.2%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0월	9월p	10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0.1	-0.4(3.2)	-1.5(2.8)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0.4	-1.9(0.7)	-3.5(-1.1)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0.4	-1.8(0.7)	-3.6(-1.1)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1.5	0.6(4.5)	3.8(8.3)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0.4	-0.2(5.9)	-0.8(5.0)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0.0	-1.9(-0.8)	-0.2(-0.7)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1.2	-2.2(12.6)	0.0(16.8)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5	0.3(5.7)	-0.1(5.0)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11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1% 하락(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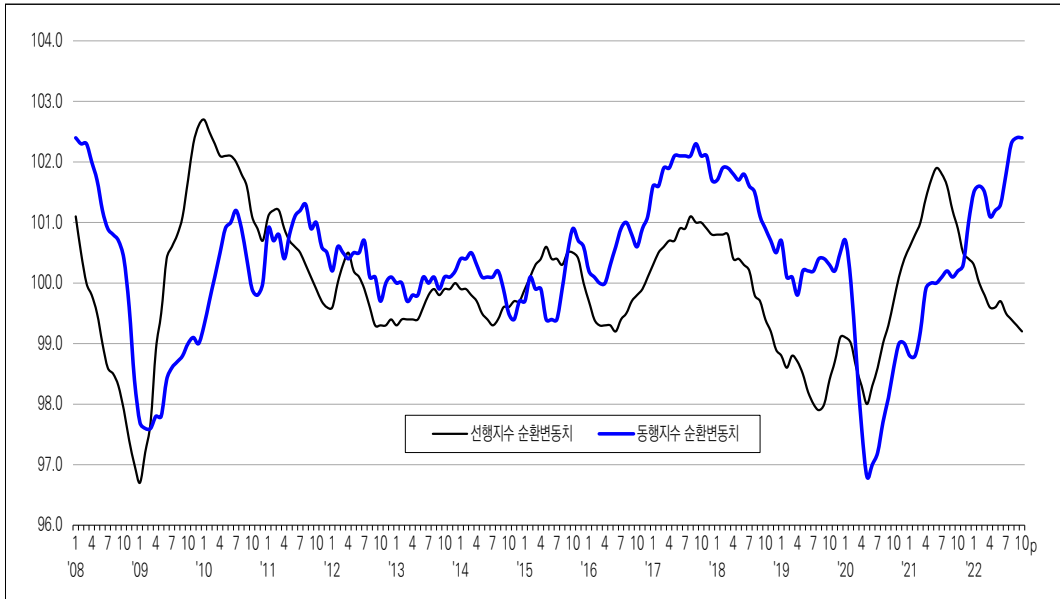
○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함(전년동월대비 5.0%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의류·신발(3.3%), 음식·숙박(0.2%), 교통(0.2%), 기타 상품·서비스(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는 상승, 주류·담배, 보건, 통신, 오락·문화, 교육은 변동 없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0.1%), 식료품·비주류음료(-2.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3%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대비 0.3% 하락함.

◆ 2022년 10월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2%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15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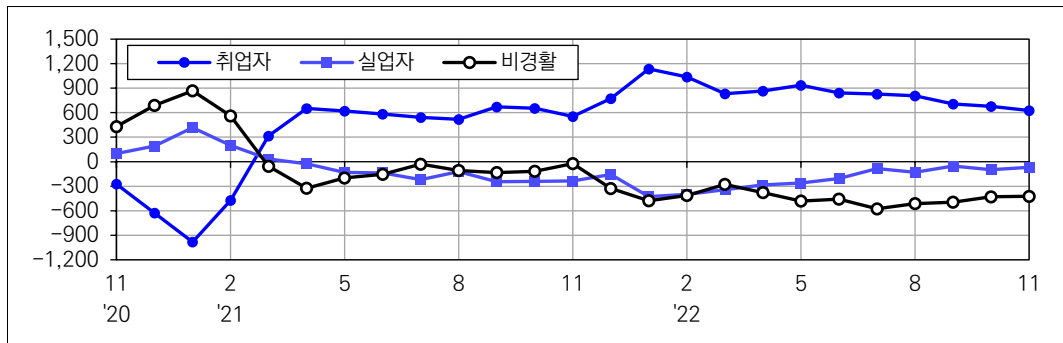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2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2만 8천 명 감소).

- (산업별)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전월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함. 서비스업은 음식숙박 및 보건복지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운수창고는 감소로 전환되고 도소매는 감소폭이 확대됨.
- (연령별) 11월은 2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고 50대는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도소매 및 운수창고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5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에서 감소로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 11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상용직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11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10월 1만 2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4만 1천 명 증가함.
- (실업자) 1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8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10월 -9만 5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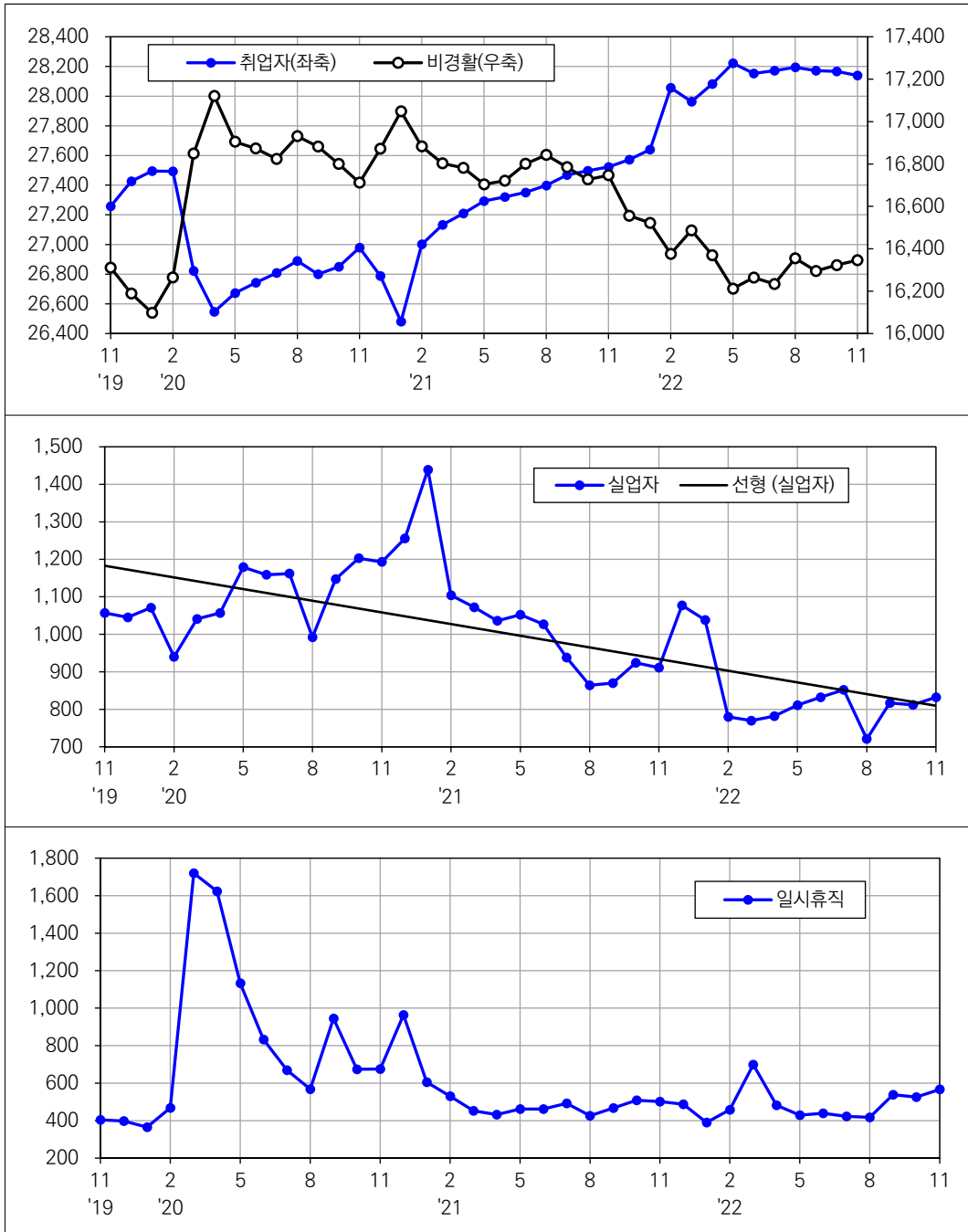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50대는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지만 도소매 및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30대와 40대는 각각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 및 감소로 전환됨. 5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에서 감소로 전환됨. 반면 음식숙박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음식숙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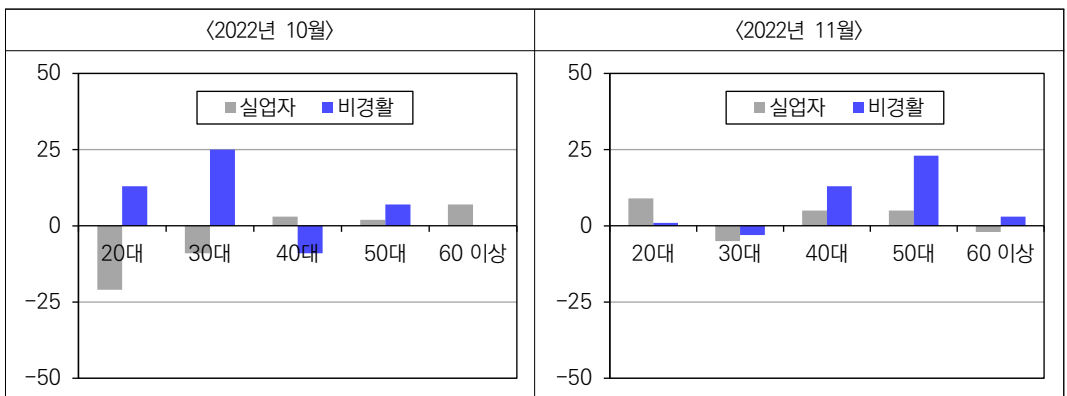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취업자	-4	-7	-1	(3)	20	28	-4	(-26)	91	61	66	(4)
실업자	-6	-3	-7	(-2)	41	5	17	(9)	5	-13	-20	(-5)
비경황	-40	-34	-32	(0)	-218	-193	-184	(1)	-214	-161	-156	(-3)
실업률	-3.2	-1.8	-4.2	(-1.3)	0.9	0.0	0.4	(0.2)	0.1	-0.3	-0.3	(-0.1)
고용률	0.0	-0.1	0.1	(0.2)	1.8	2.0	1.5	(-0.3)	2.7	2.1	2.2	(0.1)
	40대				50대				60세 이상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취업자	-17	-11	-6	(-27)	166	147	92	(-28)	451	460	479	(43)
실업자	-10	-18	-18	(5)	-47	-39	-27	(5)	-36	-28	-13	(-2)
비경황	-58	-60	-70	(13)	-87	-83	-45	(23)	123	103	65	(3)
실업률	-0.1	-0.3	-0.2	(0.1)	-0.7	-0.6	-0.5	(0.0)	-0.8	-0.5	-0.3	(0.0)
고용률	0.6	0.7	0.9	(-0.3)	1.7	1.5	0.9	(-0.3)	1.6	1.6	1.8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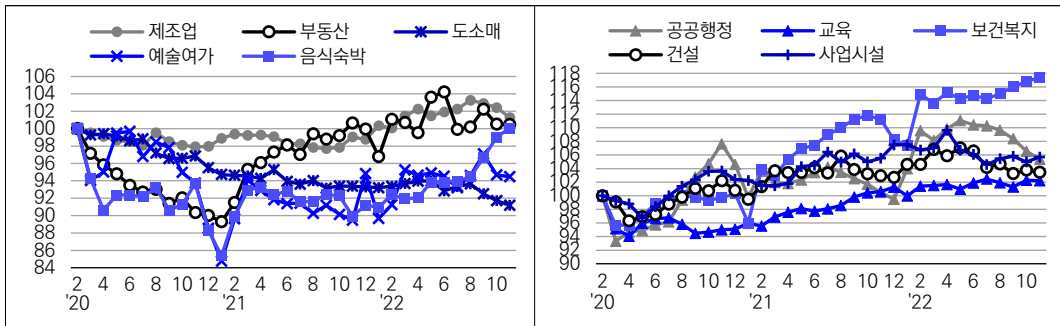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동산, 도소매, 공공행정이 감소함. 반면 음식숙박, 보건복지, 사업시설은 개선됨. 예술여가, 건설 및 교육은 정체됨.
- 도소매 및 예술여가는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84	47	59	-8	-20	30	2	0.1
광업	-4	-5	-4	1	-1	0	0	4.8
제조업	227	201	101	-17	-21	-51	-88	-1.9
전기·가스·증기	12	7	6	4	-3	-1	1	1.2
수도·원료재생	-32	-23	-27	-3	4	-3	-2	-1.6
건설업	-12	12	11	-29	10	-7	-25	-1.2
도매 및 소매업	-24	-60	-78	-41	-28	-19	-88	-2.6
운수 및 창고업	26	5	-12	-16	-11	-17	-44	-2.6
숙박 및 음식점업	94	153	231	50	54	24	129	5.9
정보통신업	62	60	52	3	-4	6	5	0.5
금융 및 보험업	-24	-15	-27	-18	12	-8	-15	-1.9
부동산업	19	7	-1	11	-9	0	2	0.3
전문·과학·기술	65	56	41	-3	1	11	9	0.7
사업시설관리지원	-5	0	2	5	-11	10	3	0.2
공공행정·사회보장	69	58	59	-14	-21	-13	-48	-3.9
교육서비스업	27	34	30	-11	18	-1	6	0.3
보건 및 사회복지	117	121	149	24	18	15	57	2.1
예술·스포츠·여가	31	23	26	13	-12	-1	-1	-0.1
협회·단체·수리·기타	-25	-7	11	17	3	24	44	4.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	-2	-5	3	-3	1	1	1.2
국제 및 외국기관	3	5	3	-1	1	0	0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11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음식숙박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에서 감소로 전환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로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816	738	678	-18	2	6	-10	-0.1
임시직	-120	-85	-83	-4	-33	-5	-42	-0.9
일용직	-114	-80	-84	-56	0	-1	-57	-4.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6	67	27	38	-13	-14	11	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7	99	129	-9	33	37	61	1.4
무급가족종사자	-59	-61	-41	-7	4	15	13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농림어업	1	2	3	1	-5	-14	-9	-11	-6	-3	-7	-16	88	74	90
제조업	233	211	132	24	23	17	-20	-23	-27	26	16	5	-29	-23	-19
건설업	23	39	59	17	17	-3	-54	-49	-44	20	14	2	-6	2	10
도소매	69	40	35	-16	-14	-31	-14	-8	-7	23	1	-7	-45	-32	-27
운수창고	4	-5	-27	-22	-31	-22	-3	-3	6	8	5	7	40	38	24
음식숙박	72	84	120	29	59	68	2	7	3	16	16	20	-28	-24	2
정보통신	65	57	56	-8	-7	-6	-5	-5	-7	-2	2	1	11	12	7
금융보험	-17	-24	-24	-18	-5	-18	3	3	3	4	5	4	3	6	7
부동산	-5	-6	-16	11	4	9	0	-3	0	3	5	4	10	7	2
전문과학기술	65	43	32	-15	-9	-14	-1	4	4	6	7	6	11	12	15
사업관리지원	-19	-9	-9	4	-9	4	-4	-4	-5	1	1	4	11	16	8
공공행정	109	97	98	-36	-38	-38	-4	-1	-2	-	-	-	-	-	-
교육서비스	49	44	35	-47	-25	-20	6	5	1	3	0	-4	22	16	20
보건복지	162	157	175	-43	-42	-31	1	2	3	-3	2	-1	2	3	4
예술스포츠	-4	-11	-12	6	9	21	1	1	0	3	5	8	22	16	9
협회단체	28	34	39	-5	-13	1	-6	7	-2	-7	-3	-3	-32	-28	-27
가구 내 고용	-2	-3	-3	-1	1	-1	-3	-3	-4	-	-	-	3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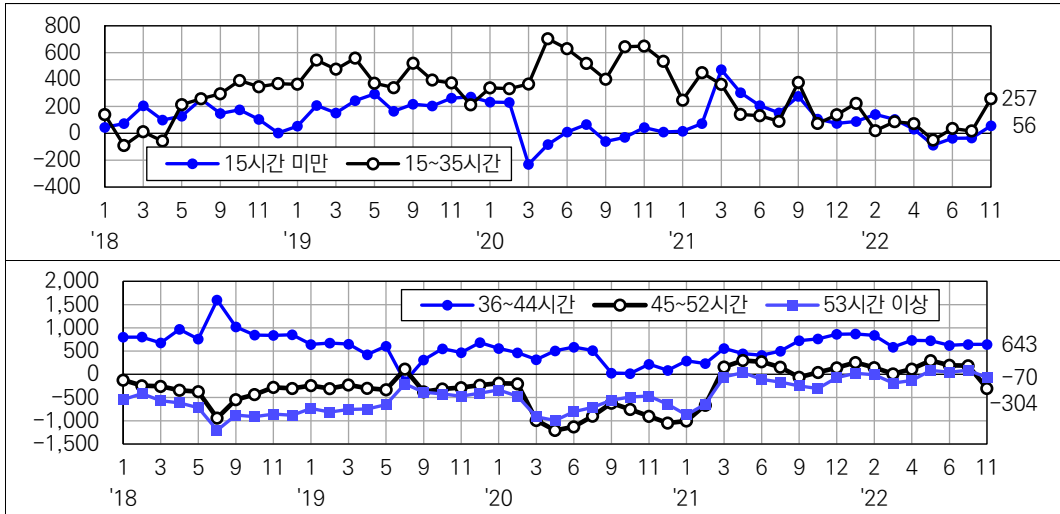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1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함.

- 45~52시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15~35시간 및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영향 때문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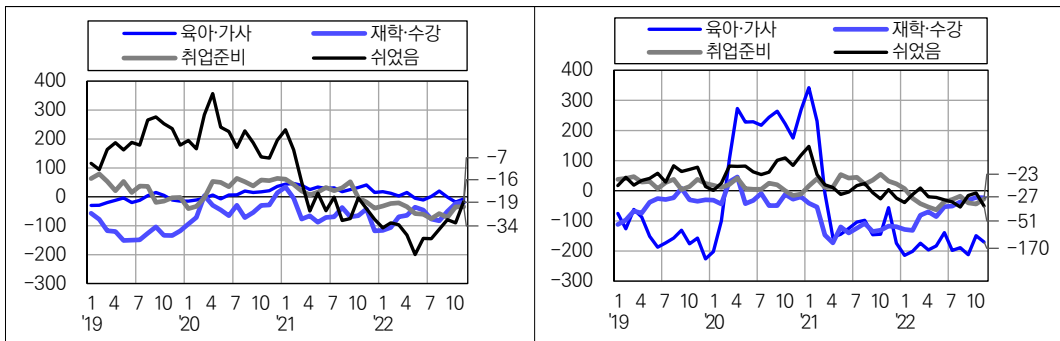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 2천 명으로 감소폭을 유지(10월 -42만 8천)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2만 6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29만 5천 명으로 육아·가사 및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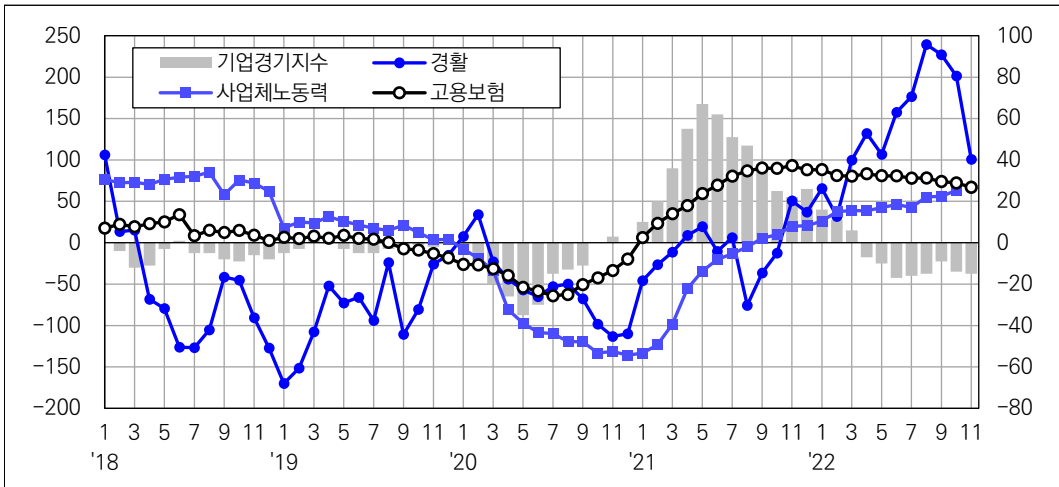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 확대

- 2022년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피보험자는 주로 전기장비, 기계장비,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5만 1천 명 감소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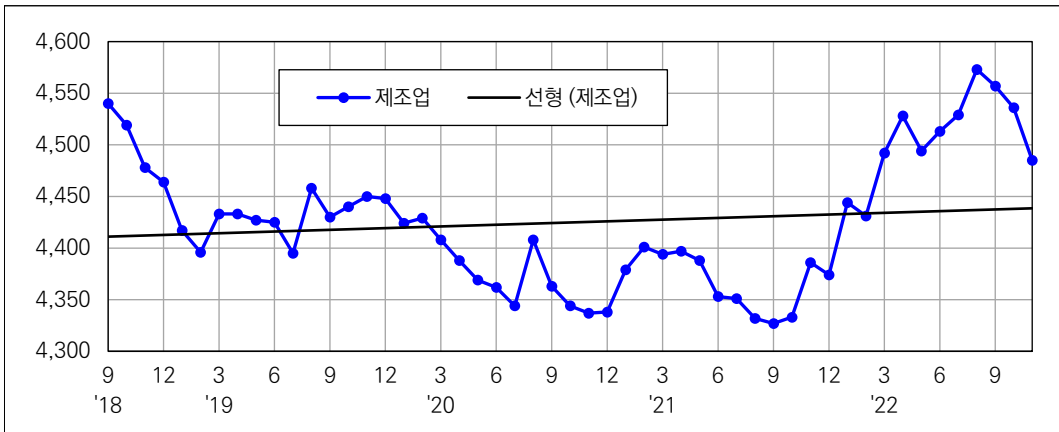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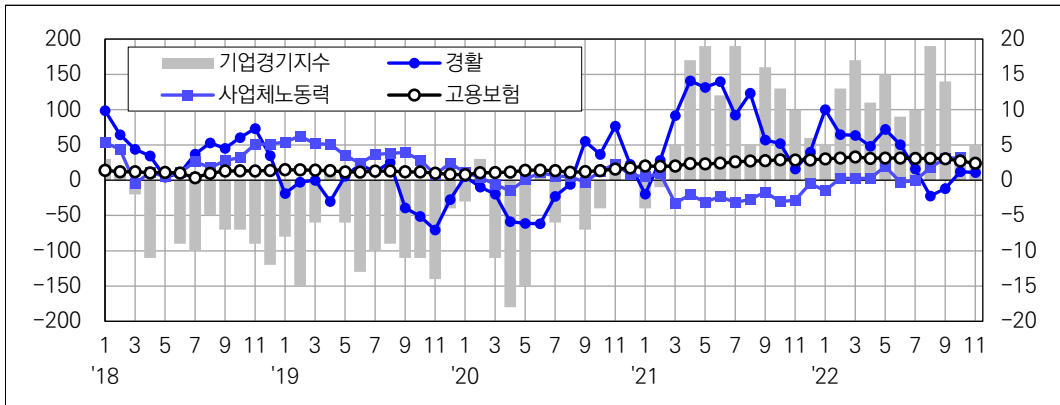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1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유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을 유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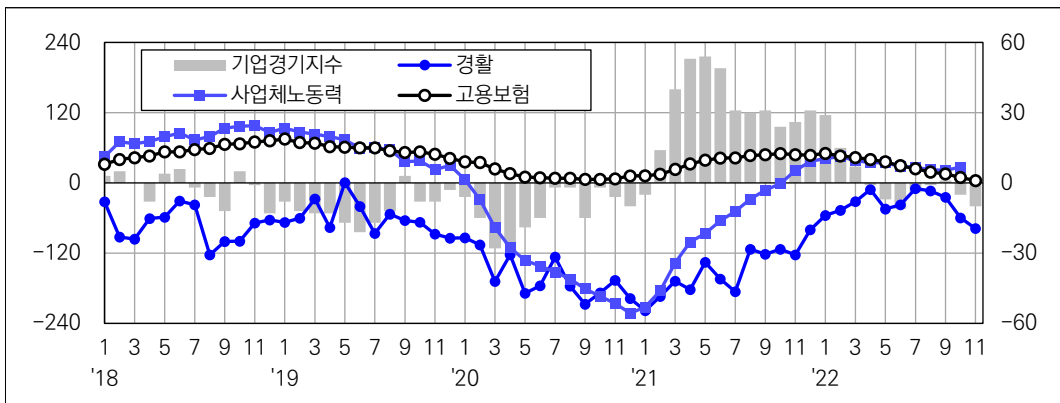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11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5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도소매) 경찰 취업자 감소폭은 확대됨.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도 축소됨.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됨. 기업경기지수 증가폭도 축소됨.
 - (음식숙박)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의 확대가 2개월째 이어짐. 그 외 지표는 횡보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 추세를 지속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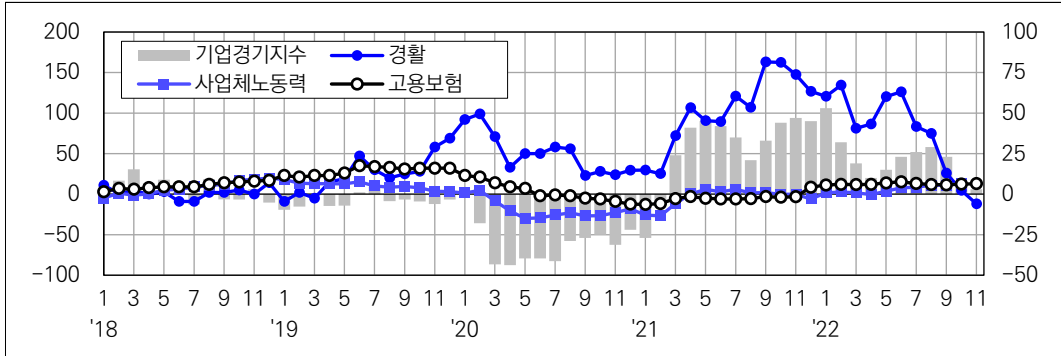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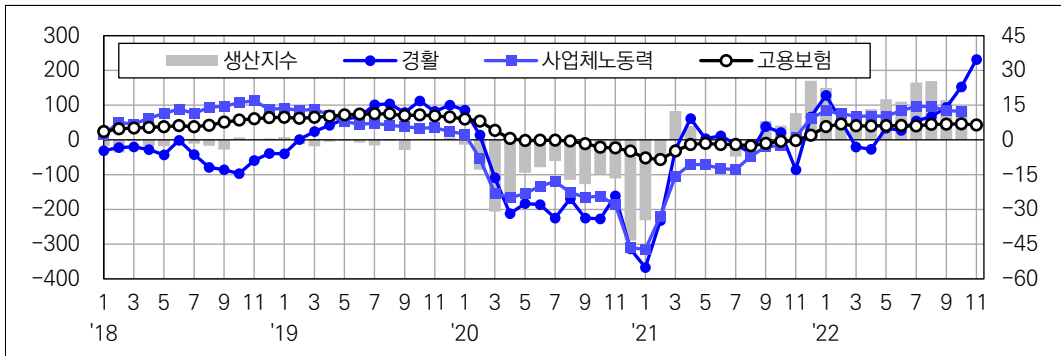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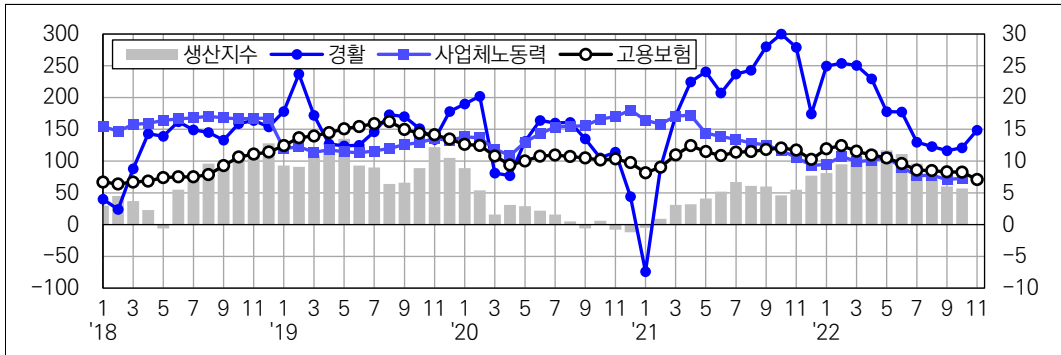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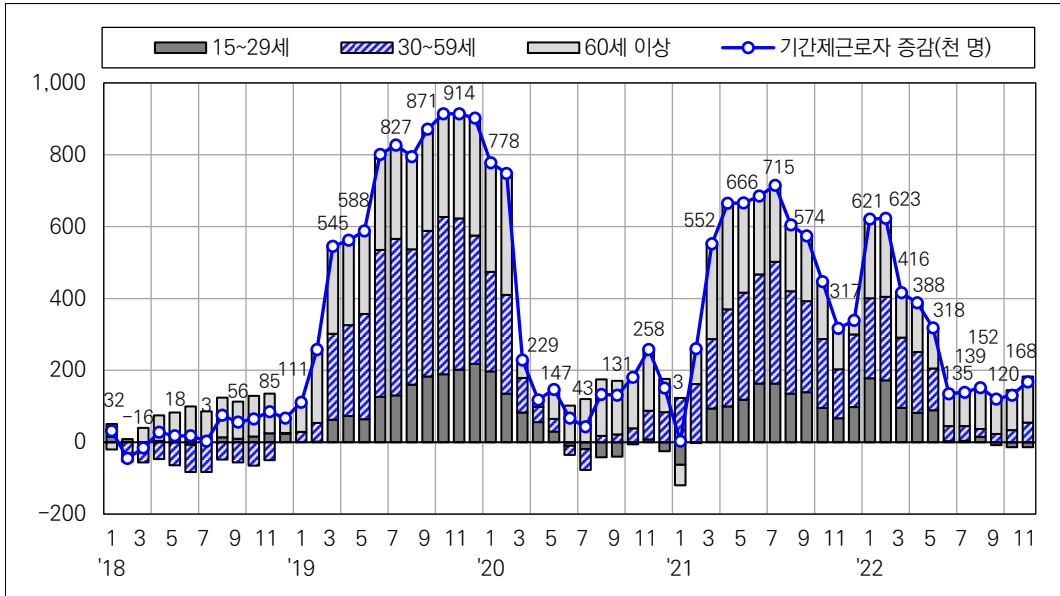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11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3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중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9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2022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8만 5천 원(3.1%)임.
 - － 2022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3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5만 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특별급여의 감소(-1.9%) 영향이 큼.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업(-49.7%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2.3%p),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0.5%p), 금융 및 보험업(-21.9%p) 등으로 나타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5.6%)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
 - － 1~9월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0.1% 상승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9월	9월	1~9월	9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675 (4.4)	3,961 (3.8)	3,865 (5.2)	4,085 (3.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3,877 (4.5)	4,197 (3.9)	4,089 (5.5)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162 (3.3)	3,172 (3.7)	3,297 (4.3)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5 (4.2)	207 (0.7)	217 (6.0)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510 (13.1)	818 (5.8)	575 (12.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691 (4.2)	1,710 (3.8)	1,738 (2.8)	1,758 (2.8)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3.2 (2.1)	103.2 (2.4)	108.9 (5.0)	108.9 (5.6)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2	1.4	0.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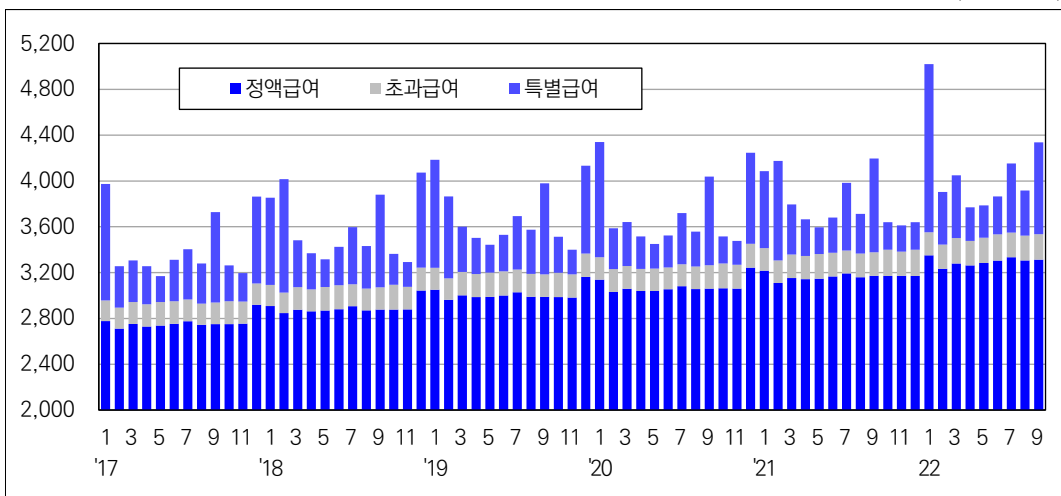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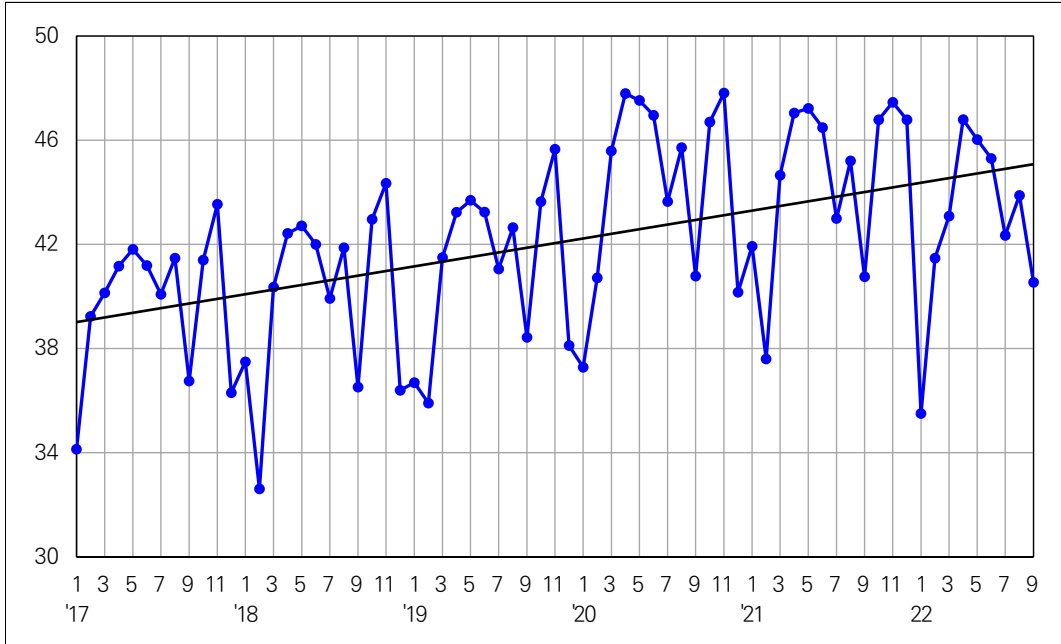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9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

- 2022년 9월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3%, 5.5% 증가함.
 - 중소기업(1~299인)·대기업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5.7% 증가함.
 - 중소기업·대기업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4%, 5.4%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전년도에는 9월에 지급됨)의 영향이 컸음.
- 2022년 1~9월 평균 중소기업·대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4%, 7.4%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전반적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9월	9월	1~9월	9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302 (3.7)	3,557 (3.8)	3,446 (4.4)	3,637 (2.3)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493 (3.9)	3,783 (3.9)	3,656 (4.7)	3,876 (2.5)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96 (3.2)	3,009 (3.6)	3,121 (4.2)	3,137 (4.3)
	초과급여	171 (-2.4)	176 (2.9)	173 (3.6)	174 (-0.9)	184 (6.0)	186 (6.7)
	특별급여	292 (-9.4)	322 (10.4)	324 (10.2)	600 (6.9)	351 (8.4)	553 (-7.8)
	비상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62 (3.7)	1,667 (3.2)	1,701 (2.3)	1,706 (2.4)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569 (5.9)	6,011 (3.8)	5,981 (7.4)	6,342 (5.5)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5,671 (6.0)	6,132 (3.8)	6,107 (7.7)	6,483 (5.7)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38 (3.1)	3,936 (3.8)	4,115 (4.5)	4,135 (5.1)
	초과급여	340 (1.4)	357 (5.1)	353 (5.2)	360 (4.1)	373 (5.9)	385 (7.0)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380 (15.4)	1,837 (3.8)	1,618 (17.3)	1,963 (6.9)
	비상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219 (9.3)	2,433 (10.1)	2,344 (5.7)	2,56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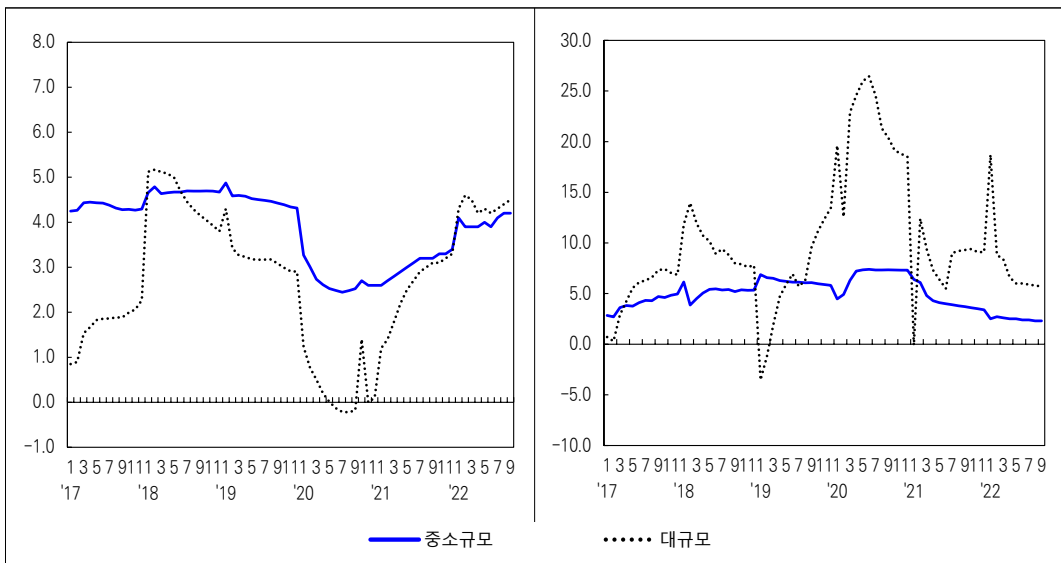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9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6.1%), 숙박 및 음식점업(5.8%), 운수 및 창고업(5.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3%) 부문으로 5~6%대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0%), 금융 및 보험업(-1.4%)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2022년 9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72만 6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752만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61만 9천 원) 순인 가운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8만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9월	9월	1~9월	9월
전 산업	3,527	3,689 (4.6)	3,675 (4.4)	3,961 (3.8)	3,865 (5.2)	4,085 (3.1)
광업	4,325	4,415 (2.1)	4,445 (2.4)	4,831 (2.4)	4,621 (4.0)	4,911 (1.6)
제조업	3,990	4,239 (6.2)	4,206 (5.9)	4,582 (4.0)	4,487 (6.7)	4,777 (4.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835 (0.5)	10,817(-2.1)	6,957 (1.8)	10,726(-0.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4,007 (4.8)	4,621 (5.0)	4,084 (1.9)	4,481(-3.0)
건설업	3,032	3,106 (2.4)	3,093 (1.6)	3,288 (1.9)	3,221 (4.1)	3,379 (2.8)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531 (3.7)	3,725 (2.3)	3,735 (5.8)	3,954 (6.1)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3,735 (6.3)	4,049 (8.7)	3,962 (6.1)	4,264 (5.3)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1,892 (0.5)	1,966 (1.8)	1,999 (5.7)	2,080 (5.8)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4,815 (3.8)	4,929 (1.9)	4,999 (3.8)	5,040 (2.3)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7,027 (7.4)	7,628 (7.7)	7,380 (5.0)	7,520(-1.4)
부동산업	2,848	2,954 (3.7)	2,941 (3.2)	3,089 (5.2)	3,091 (5.1)	3,089 (0.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5,056 (4.5)	5,338 (3.5)	5,358 (6.0)	5,619 (5.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481 (3.6)	2,639 (4.9)	2,571 (3.6)	2,664 (1.0)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419(-0.4)	3,728 (0.8)	3,492 (2.1)	3,759 (0.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3,012 (2.4)	3,293 (4.5)	3,126 (3.8)	3,318 (0.8)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2,987 (3.8)	3,209 (3.3)	3,063 (2.5)	3,228 (0.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703 (5.6)	2,948 (3.7)	2,834 (4.8)	3,087 (4.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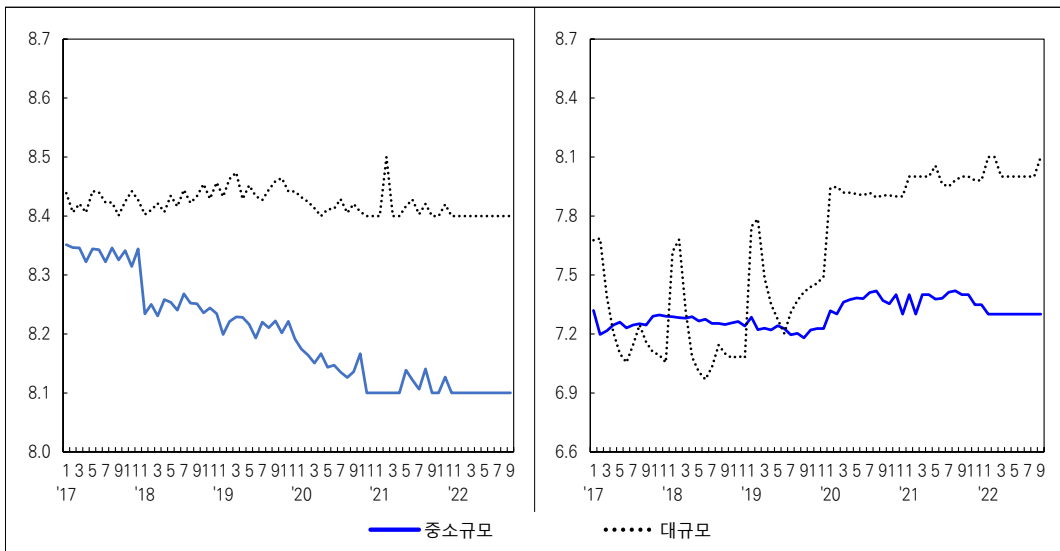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0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2022년 9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9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감소함.
 -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9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증가 영향이 큼.
 -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등으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1~9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시간 감소함.
 - － 2022년 1~9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1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 등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9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54.1시간, 15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7시간, 6.6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9월	9월	1~9월	9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59.1(-0.7)	149.4(-7.7)	157.3(-1.1)	154.1(3.1)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6.3(-0.8)	155.9(-8.0)	164.6(-1.0)	161.5(3.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58.7(-0.8)	148.3(-8.1)	157.0(-1.1)	154.0(3.8)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6(0.0)	7.5(-6.3)	7.6(0.0)	7.5(0.0)
	비상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7.0(1.3)	95.1(-1.5)	96.3(-0.7)	93.9(-1.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1.7(-0.9)	149.6(-9.2)	159.3(-1.5)	156.2(4.4)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2.7(-0.9)	150.6(-9.3)	160.5(-1.4)	157.5(4.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1.7(-1.1)	139.5(-9.9)	149.5(-1.5)	146.5(5.0)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1.0(1.9)	11.1(0.0)	11.0(0.0)	11.0(-0.9)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8.1(1.9)	120.3(-1.1)	124.8(-2.6)	119.9(-0.3)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9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9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7.9 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업(167.4시간), 부동산업(166.1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1.1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9월	9월	1~9월	9월
전 산업	160.6	160.7(0.1)	159.5(-0.8)	149.4(-7.9)	157.6(-1.2)	154.4(3.3)
광업	181.2	179.9(-0.7)	178.6(-0.8)	163.7(-10.7)	173.8(-2.7)	167.4(2.3)
제조업	172.7	173.5(0.5)	172.2(0.1)	159.8(-9.4)	169.5(-1.6)	166.0(3.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2.5(-1.0)	162.6(-1.9)	157.9(-2.8)	160.4(-1.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5.3(-0.8)	164.3(-7.4)	173.5(-1.0)	167.9(2.2)
건설업	136.9	135.9(-0.7)	135.0(-1.9)	127.8(-7.1)	133.9(-0.8)	131.1(2.6)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2.7(-0.9)	152.2(-8.3)	161.3(-0.9)	157.8(3.7)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59.1(-0.1)	150.9(-5.3)	159.4(0.2)	157.5(4.4)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6.9(-2.3)	142.3(-3.5)	145.7(-0.8)	142.1(-0.1)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3.0(-0.9)	150.9(-8.7)	161.8(-0.7)	158.2(4.8)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61.0(-1.1)	147.8(-9.9)	158.8(-1.4)	156.2(5.7)
부동산업	173.2	171.8(-0.8)	170.8(-1.4)	162.5(-6.8)	168.4(-1.4)	166.1(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0.6(-1.3)	147.9(-9.3)	159.2(-0.9)	155.6(5.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61.1(-0.5)	151.2(-6.7)	158.9(-1.4)	155.3(2.7)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6.1(-0.4)	127.1(-6.6)	135.1(-0.7)	133.4(5.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7.0(-1.1)	148.0(-7.9)	154.3(-1.7)	151.5(2.4)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1.8(0.7)	145.3(-2.4)	150.2(-1.1)	147.5(1.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1.1(0.4)	151.7(-6.8)	159.2(-1.2)	154.7(2.0)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3건
 - 1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0건)보다 7건 적은 수치임.
- 2022년 11월 조정성립률 50.0%
 - 1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25.0%보다 25.0% 많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1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11	13	13	6	4	2	6	1	5	1	0	7	50.0%
2021. 11	20	12	3	1	2	9	0	9	0	0	11	25.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11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1건임.

〈표 2〉 2021년, 2022년 11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11.	1	1	1	0	0	4
2021. 11.	0	1	0	0	1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42건
 - 11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41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9.5%(4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0.5%(117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1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11	142	166	45	4	94	5	10	8	436
2021. 11	141	185	53	8	82	11	20	11	43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2건
 - 11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5건)보다 3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00.0%(3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0.0%(0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11	2	3	3	0	0	0	0	0	7
2021. 11	5	5	1	0	3	1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²⁾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513건
 -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99건)보다 186건 적은 수치임.
 - 10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622건)보다 160건 적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10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1. 10	699	622	131	220	96	175
2022. 10	513	462	105	119	72	16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 권고

- 12월 12일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한 미래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음.
- 개편안은 초과근무 시간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권고한 것임.
- 초과근무 개편 시 초과근무 총량 한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임.
-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제안하였음.
-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하였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에 연구개발만 3개월, 그 외 업종은 1개월만 허용했는데 이를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음.
- 사업장의 다양한 직군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음.
-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권고했고,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음.

◆ 화물연대, 총 파업 종료

-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한 결과 61.9%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밝혔음.
- 화물연대에 따르면,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7%)이며 이 중 2,211명(61.9%)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6%)이 반대했음.
-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였음.
- 파업 종료 뒤에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화되었다는 입장임.

◆ 서울대병원 노사 '61명 인력충원' 잠정합의

- 11월 2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노사가 2022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서울대병원 노사는 △총액 대비 1.4% 임금인상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 위기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충원 등에 잠정합의했음.
- 인력증원은 서울대병원(본원) 14명, 보라매병원 47명으로 총 61명 충원하기로 했음.
-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15일당 하루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위해 등급기준을 간호사 1명당 환자수로 변경했음.
- 노사는 공동으로 1등급 기준을 '7명 이하'로 2등급 이하 배치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음.

◆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 12월 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사측은 2022년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9월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음.
- 노조가 요구한 안전 관련 인원 충원 요구는 일부 수용하기로 하였고, 임금은 작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는 데 합의했음.
- 노사는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 12월 13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12월 6일 나왔던 1차 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격려금 350만 원 지급 △주유 상품권 30만 원 지급 △생산기술직 정년퇴직자 기간제 채용 확대 등이 담겼음.
- 1차 합의안은 12월 8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을 넘기지 못하고 부결되었음.
- 12월 13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37차 교섭에서 2차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 2차 합의안은 부결된 1차 합의안에 주유상품권 20만 원 지급,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상향 등이 추가되었음.

◆ 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 타결

- 2022년 12월 8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음.
- 투표는 노조원 4,809명 중 4,50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659명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음.
-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12월 6일 41차 교섭 끝에 임단협 협상안을 잠정합의했음.
-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8만 5,000원(정기승급분 포함)을 인상 △격려금 200만 원 지급 △하기 휴가비 30만 원 인상 △정년 1년 연장(촉탁) △2009년 이후 입사자 초임급(처음 받는 임금) 조정, △제도 개편 등이 담겼음.

◆ 홈플러스 노사 '2022년 임금협약' 합의

- 12월 13일 홈플러스는 교섭대표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 노사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직급,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4.7% 인상하고 설·추석 명절 지급 상품권 금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인상기로 했음.
- 12월 급여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급분은 1월 2일에 지급할 예정임.

◆ 한수원, 전 직원에 직무급제 확대 적용

- 12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도 도입에 최종 합의하였음.
- 한수원은 1만여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위해 회사 내 316개 직위와 258개 직무를 분석·설계해 직무 기술서를 정립하는 직무체계를 준비해 왔음.
- 한수원 노사는 90일 동안 임금교섭 끝에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했음.

◆ 대법 “경찰 헬기진압은 위법, 노동자 저항은 정당방위”

- 11월 30일 대법원은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파업 진압작전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청구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헬기 및 기중기 수리 비용을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여부였음.
- 경찰은 조합원들이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손상됐다면 헬기·기중기 수리 비용 및 수리 기간 동안 크레인업체에 지불한 휴업 비용까지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항소심은 헬기 파손에 대한 경찰 청구액 6억 8천여만 원 중 노조가 5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와 최루액 등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음.
- 대법원은 경찰항공 운영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할 때 “의도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해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직접 하강 풍에 노출시킨 것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봤음.
- 위해성 경찰장비인 최루액에 대해서도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살포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음.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조합원들이 새총으로 볼트 등을 발사해 헬기 3대를 손상했다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그동안 대법원은 불법 농성 등과 관련한 경찰의 진압 방법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어 왔음.
- 이날 대법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음.

◆ 청소년 배달노동자들 2명 중 1명 “사고 경험”

- 11월 27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2명 중 1명(50%)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청소년노동센터는 광주지역에서 배달노동을 하는 24세 미만 청소년 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음.
-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고등학생이 67.3%로 가장 많았음. 고등학교 졸업생은 17.3%, 대학생

- 은 9.6%였음.
- 배달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청소년들의 평균 사고 횟수는 2.5회나 됐음.
 -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배달노동 종사 기간이 길수록 크게 늘어났음.
 - 1년 이상 배달에 종사한 청소년 노동자의 88.9%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의 사고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았음.
 - 헬멧 등 안전 보호 장구 없이 배달하는 청소년은 61.5%에 달했음. 배달대행업체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42.3%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음.
 -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산재보험 가입률도 42.3%에 그쳤음. 산재보험 가입은 2021년 7월 의무화됐는데도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셈임.

◆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의 '35배'

-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100명 중 1명이 폐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 187명이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음, 이는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병률이 35배 높다는 의미이고 검진자 중 4,706명(28.8%)은 양성결절 등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됐음.
-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은 0.0288%(인구 10만 명당 3,491명 발병)임.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55세 이상이거나 경력 10년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단층촬영(CT) 등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전체 검진대상자 2만 1,393명 중 1만 8,545명(86.7%)이 완료했음.

◆ 특고노동자 절반 이상 "주 53시간 넘게 일해"

- 1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 2,600명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인 조합원 672명을 대상으로 별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특고노동자의 주일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이들이 전체의 55.4%에 이르렀고, 노동시간이 1주에 4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이는 25.7%였음.
- 특고노동자 43.8%는 1주에 평균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음. 또 31.4%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준비·이동 시간이 1주 평균 20시간 이상이라고 답했음.
- 조합원 2,6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노동시간 규제를 월 단위까지 확장할 경우 "(일이 몰

리는 주에) 집중노동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하는 이가 89.5%(매우 동의 63.4% 포함)에 이르렀음.

- 현행 한국 노동시간 체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1.3%가 주 52시간 체제라고 응답해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양대 노총은 지적했음.

◆ 직장인 10명 중 7명 “구조적 성차별 있다”

- 11월 28일 직장갑질119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6%로 나타났음.
- 여성(86.3%)이 남성(65.8%)보다 높았지만 남성 역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임.
-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2.2%로 나타났음.
- 직장 내 성범죄 원인의 주요 원인 2가지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서는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을 가볍게 대하는 사회적 인식(50.8%) △회사에 신고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사회 분위기(36.1%)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폭력적 연예관(35.2%)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사유화하는 인식(28.2%) 순으로 나타났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